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4. 20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4. 2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4. 28) 상정

○ 제7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5. 1)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식산업과장 정진환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화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

○ 부천만화정보센터의 기능 추가

- 법인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
나. 주요골자

- 만화정보센터의 기능 추가 신설(안 제3조)

- 만화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
-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
-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

- 사단법인화 근거조항 추가(안 제3조)

- 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함

- 법인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
- 제4조(운영위원회), 제5조(소장), 제6조(사무국장 및 사무원), 제7조(사무국장의 채용), 제8조(사무원의 채용), 제9조(임기), 제10조(복무), 제11조(해임), 제12조(자원봉사), 제15조(운영규정)

- 필요조항 신설

- 제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, 제7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, 제8조(업무지도), 제9조(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사단법인화의 근거와 장·단점은?	○ 법적 근거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경상적경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 경기도 감사시 조직과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법인화시키고자 합니다.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와 공조직 사이에 있습니다.
○ 법인화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	○ 관리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.
○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를 보면 의회에서 관여를 못 하는데	○ 네.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○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	○ 만화정보센터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예산집행과 조직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개정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. 의회와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지역정보센터도 사단법인화되어 있으며 공조직이 축소되고 민·관이 함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유보대상이 아님. 이번 회기에 결정해야 될 것임
- 법인화하여 단체가 구성되면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여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임
- 그 동안 만화정보센터가 부천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였음
-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 행정조직에서 안 떠를 수 없을 것임
- 별도 현금출자 등 예산수반 사항은 없을 것임. 현행대로 추진하면서 경상적 보조가 가능하도록 내부절차의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인식하면 가능함

나. 반대토론

- 의회 동의를 구하면서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으며 주무부서도 확실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함 좀더 내용을 검토 파악하여 6월 중 회기 때 처리하여도 될 것임. 의회와 사전 대화가 없었음
-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의회가 따라다니면 안 됨. 또 한번 지적을 당하는 예가 있어도 좀더 문제 점을 검토한 후 처리해도 될 것임
- 감사시 지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하여 6월 회의시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을 벌여놓은 다음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당연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단체 또는民間에 위탁하여 끌치아픈 것은 떼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음
- 시책추진이 일관성 없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09호
의결년월일	2000. 5. 3 (제78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0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화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
- 부천만화정보센터의 기능 추가
- 법인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
□ 주요골자

- 만화정보센터의 기능 추가 신설(안 제3조)
 - 만화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
 -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
 -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
- 사단법인화 근거조항 추가(안 제3조)
 - 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함
- 법인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
 - 제4조(운영위원회), 제5조(소장), 제6조(사무국장 및 사무원), 제7조(사무국장의 채용), 제8조(사무원의 채용), 제9조(임기), 제10조(복무), 제11조(해임), 제12조(자원봉사), 제15조(운영규정)
- 필요조항 신설
 - 제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, 제7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, 제8조(업무지도), 제9조(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)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만화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
1. 국내외 만화관련 정보의 수집·관리 제공
2.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기획 실행
3. 국내 만화인들간의 상호교류 촉진
4. 만화지망생들의 교육 및 친숙한 만화문화 육성
5. 만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
6.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
7.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
8.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

제4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고, 제13조를 제4조로 하며, 제13조 중 “경비”를 “사업비 또는 경비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14조 중 “소장”을 “법인”으로 하며, 동조 중 “3월”을 “2월”로 한다.

제6조 내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지도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)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0조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만화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은 사단법인 등기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	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
제3조(기능) ①(신설)	제3조(기능) ①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.
①만화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	②(현행과 같음)
1~4 (생략)	1~4 (현행과 같음)
(신설)	5. 만화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
(신설)	6.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
(신설)	7.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
5. 기타 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8. <u>위탁사업</u>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만화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내외의 만화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(삭제)

②위원회는 분기1회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별도 개최할 수 있다.③위원회에서는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계획 등 중 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만화정보센터 운영에 반영한다.④위원회 참석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한다.제5조(소장) ①만화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소장1인을 두되 만화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의견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(삭제)

②소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③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,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俸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급할 수 있다.제6조(사무국장 및 사무원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5인 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(삭제)

②사무국장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제7조(사무국장의 채용) 사무국장은 만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의견을 가진 자로 하여 시장이 채용하며 결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.

(삭제)

제8조(사무원의 채용) ①사무원은 관내 거주자 또는 만화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

(삭제)

<p><u>자로 하여 시장이 채용하되 결정방법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<u>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소속공무원을 보조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.</u></p>	
<p><u>제9조(임기) ①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소장 및 사무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</p>	(삭제)
<p><u>제10조(복무)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(해임) 시장은 소장, 사무국장 및 사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</u></p>	(삭제)
<p><u>1. 본인이 사임을 원한 경우</u></p> <p><u>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</u></p> <p><u>3.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</u></p> <p><u>4. 기타 채용목적이 소멸될 때</u></p>	
<p><u>제12조(자원봉사요원)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돋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(삭제)
<p><u>제13조(직원) 시장은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4조(지원)사업비 또는 경비.....</u></p>
<p><u>제14조(사업계획 등 보고) 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, 회계연도 개시 3월 말 까지 전년도의 실적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</u></p>	<p><u>제5조(사업계획 등 보고) 범위.....2월 말</u></p>

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(신설)	<u>제6조(공무원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법인의 대표 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</u>
(신설)	<u>제7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</u>
(신설)	<u>제8조(업무지도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
(신설)	<u>제9조(민법 및 타법령의 준용)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u>
제15조(운영규정) 시장은 만화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, 비치, 열람, 이용규칙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	(삭제)
제16조 (생략)	제10조 (현행과 같음)